
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,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).
-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).
- 개정규정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,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(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 절차 및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을 신설하고,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과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, 안 제3조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실제 조문이 일몰됨에 따라 안 제8조제2항제1호의2의 위원회 심의·의결 관련 절차 조문도 사문화되므로 이를 유효기간 적용 대상에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안 부칙 제3조에서 유효기간 만료 후 “중전의 규정에 따른다”고 규정할 경우, 개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근거 자체가 상실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바, 유효기간 만료 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지위와 의무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

이에,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.

개정안 부칙	수정의견
제2조(유효기간) <u>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</u>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<u>그 효력을</u> 가진다.	제2조(유효기간) <u>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제2항제1호의2의</u> ----- <u>효력을</u> -----.
제3조(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) <u>이 법의</u>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개발사업 시행 및 설비의 양도·양수 등에 관하여는 <u>제2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.</u>	제3조(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) <u>부칙 제2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</u>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